

# 「구미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어린이와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두는 구미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·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안 제6조)
-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감독 및 평가에 대한 사항(안 제8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,  
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5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어린이와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두는 구미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센터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해 보임.
-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소에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시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